

##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7. 3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옴부즈만담당 정원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조문 해석 시비의 사전 차단
- 명예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

#### 나. 주요골자

- 시민옴부즈만 연임조건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 삽입
- 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시의원은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1명씩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?	○ 진정,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부당 또는 법규에는 맞지만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 제한된 업무를 다루는 것입니다.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.
○ 실적 위주로 일하는 것입니까?	○ 아닙니다.
○ 명예시민옴부즈만을 현재 위촉해 놓은 상태죠?	○ 35명을 추천받아 명단만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.
○ 공중전화카드가 나갔습니까?	○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지급하지 않았고 활동도 연기시켰습니다.
○ 임기 2년 만료 후 공백상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?	○ 임기 만료 전 사전 선정하여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.
○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임의기구 아닙니까?	○ 선정위원회는 옴부즈만실 고유업무가 아니고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였습니다.

#### 4. 토론요지

##### 가. 찬성토론

-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시키도록 하면 법률해석 판단이 쉬울 것임.

##### 나. 반대토론

- 이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쇠연이 있으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단체와 제도가 있는데 굳이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둘 필요가 있는지?
-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두면 공중전화카드 비용 뿐만 아니라 간담회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을 것임.

#### 5. 심사결과

##### ○ 수정가결

#### 6. 소수의견요지

-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꼭 필요한지?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임기 만료 후 공백기간이 없도록 사전준비 철저

##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59호
의결년월일 (제71회)	99. 7. 8

제출년월일 : 1999. 7. 3

제출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# □ 수정이유

-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 각 동에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하는 명예시민옴부즈만은 현행 제도나 규정에 있어 고충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동마다 1명씩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"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을 각 동별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옴부즈만은 대표 옴부즈만이 위촉한다."를 삭제(안 제7조6항)

##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# 안 제7조(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)

제6항 내용중 "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을 각 동별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명예시민옴부즈만은 대표 옴부즈만이 위촉한다."를 삭제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<u>1회에 한하여 연임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<u>1회에 한하여 의회</u> <u>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	<p>제7조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(개정안과 같음)</p>

④(생략)	④(현행과 같음)	④(개정안과 같음)
⑤(생략)	⑤(현행과 같음)	⑤(개정안과 같음)
⑥(신설)	<p><u>⑥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</u></p> <p><u>충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</u></p> <p><u>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을</u></p> <p><u>각 동별 1명씩 위촉하여 운영</u></p> <p><u>할 수 있으며, 명예시민옴부</u></p> <p><u>즈만은 대표 유통부즈만이 위촉</u></p> <p><u>한다.</u></p>	⑥(삭제)

## [수정안 포함]

**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**

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